

#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0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29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춰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의회 홍보대사 임무와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,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제정안의 목적을 ‘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’으로 함(안 제1조).
- 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2조제1항 각 호).
- 특정 임무만을 수행하는 의회 홍보대사의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 후단 신설).
-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규정을 변경함(안 제4조제2항).
-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함(안 제7조 삭제).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#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시정” 을 “의정” 으로, “제고를” 을 “향상을” 로 한다.

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“활동에 관한 사항” 을 “홍보 활동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작에 관한 사항” 을 “출연 등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행사에 관한 사항” 을 “행사 참석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안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필요시 임시회의” 를 “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” 로 한다.

안 제7조를 삭제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시정</u>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<u>제고</u>를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임무) 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<u>활동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<u>제작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<u>행사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·협력에 <u>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 <p>제3조(위촉) ①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정</u>----- -- <u>향상을</u> -----.</p> <p>제2조(임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----- <u>홍보 활동</u></li> <li>2. ----- <u>출연</u> <u>등</u></li> <li>3. ----- <u>행사 참석 등</u></li> </ol> <p>&lt;삭 제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. ----- ----- ----- -----</li> </ol> <p>--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촉) ① (원안과 같음)</p>

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제4조(운영) ① (생략)

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-----  
----- . 다만,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) ① (원안과 같음)

② -----  
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-----  
----- .

<삭제>

##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임무)** 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
2.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등
3.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
4.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**제3조(위촉)**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.

1. 의회의 위상제고 및 서울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
2. 의회의 경제적,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
3.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

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

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운영)**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,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.

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촉 해제)**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3.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4.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**제6조(예우)**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